# 서울고등법원 2026년 3월 선고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2023나2056133 대여금 확정

[제6-2민사부 2025. 11. 13. 선고] <국제사법>

□ 사안 개요

- 중국 국적의 원고가 2017. 12.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데, 2019. 10. 제주도에 있는 피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의 소로 2019.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쟁점

- 외국에서 먼저 소가 제기되어 진행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된 이른바 국제적 소송경합의 경우, 국내의 후소가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소극)

□ 판단

-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란 '국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을 의미하므로, '외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는 중복된 소제기를 금지하는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적용되지 않음. 국내 법원에 후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실정법상 규정을 발견할 수 없음. 국제적인 소송경합의 경우에는 후소를 일률적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규율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개정 국제사법은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하여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지 아니한 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는 '임의적 소송절차 중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국내 법원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를 통하여 외국법원에 제기된 선소를 고려하여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
-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국내 법원에 다시 제기되어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외국법원의 재판이 장차 민사소송법 제217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승인받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를 곧바로 각하할 수는 없음. 국내 법원에 제기된 후소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또는 국내 법원에서 후소를 재판하는 것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소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소각하 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으로 환송함

2024나2027064 약정금 상고심 계속 중

[제13민사부 2026. 2. 6. 선고] <민사일반>

□ 사안 개요

- 원고(법무법인)와 피고(회원제 골프장 운영 회사)들 사이에, 피고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등이 행정소송, 헌법소원, 관할관청에의 진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변경되게 하는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함
- 착수금은 0원으로 정하고, 위임사무가 '판결, 헌재결정, 정부 법령개정 등으로 성공한 때'에 승소금액 또는 감액분의 12%를 성과보수로 정함
- 원고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음(2016헌가17등 사건). 이후 다른 골프장에 대한 400여건의 재산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유사한 취지의 행정소송이 제기됨
- 2020. 1. 1. 회원제 골프장의 보존임야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 등이 경감되었고, 2020. 3. 26.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하여 합헌 결정함(합헌 6: 헌법불합치 3)

□ 쟁점

- 원고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 원고의 행정소송 및 위헌법률심판 사건 소송대리행위와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산세 등 감액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하여 직접 시행령 개정을 위한 위임사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원고는,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할 경우 정부가 7,500억 원가량을 환급해 주어야 하고 매년 4,000억 원 이상 세수감소가 예상되어 행정안전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원고가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들이 원고와 무관하게 시행령 개정을 위해 독자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세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제기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정부의 조세 정책 입안 시 참고할 만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거나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관부처의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관련 소송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청구기각)

2024나2002713 손해배상(의) 확정
[제9민사부 2025. 7. 24. 선고] <의료>

□ 사안 개요

- 원고는 조현병 진단을 받고 피고 병원에 내원 후 입원함. 원고는 간호사 인솔 하에 피고 병원 내부를 산책하다가 난간을 넘어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완전한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자살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의 행동을 주의 깊게 감시·관찰하지 않았다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치료비채권으로 상계항변 함

□ 쟁점

- 의사의 과실로 환자의 신체기능이 손상된 이후 후유증 치유 또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만 계속된 경우 병원 측이 치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법리의 적용 범위

□ 판단

- 원고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원고에게는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부분인 25%(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부분), ㉯ 피고의 과실로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부분인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볼 부분), ㉰ 원피고 모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부분인 37.5%(책임 제한 사유 중 원고의 귀책사유로 보지 못할 부분)로 구성되어 있음. 위 ㉮, ㉰에 해당하는 합계 62.5%(= 25% + 37.5%)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음. 그러나 ㉯에 해당하는 37.5%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음(원고 일부 승)
- 위 대법원판결은 치료비 채무에서 ㉰ 부분의 위험을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켜 가급적 의사 또는 병원으로 하여금 '진료 시 주의의무'를 충족하여 진료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고, 법리적으로는 ㉰ 부분도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려는 것임. 그러나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 채무는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킬 이유가 없음. 피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 부분을 의사 또는 병원 측에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적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함. 법리적으로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치료'임. 수단채무인 의사 또는 병원의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의 잘못으로 그 치료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을 뿐임. 또한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치료'가 아님. 피해자의 잘못으로 생긴 후유증이므로, 의사 또는 병원이 그 손해를 전보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 위 대법원판결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 제3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와, ㉡ 가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결론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음. 즉,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병원의 실제 배상 범위가 달라짐. 그로 인한 정책적 문제 또는 부작용을, ㉯ 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비는 병원이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음